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재나25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가합71963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2762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15.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49,896,0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 소유 C주유소를 관리, 운영한(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 C주유소의 전 재산을 박탈(강탈)하여 피고의 개인 주유소로 만들어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C주유소의 전 재산을 반환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1993년 말경부터 C주유소 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1995. 1.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C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1997. 12. 31. D로부터 영업 전부를 양도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1963호로 원고가 C주유소의 신축 및 운영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피고에 대한 각종 채무의 잔액은 2,004,089,512원인데,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받은 배당금액, 그밖에 원고로부터 자동세차기 리스료로 변제받은 금액 및 피고가 원고에게 C주유소의 관리·운영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정산금 또는 임대료를 모두 합산하면

2,553,994,538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549,896,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762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4.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다3054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8.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5. 8. 18.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C주유소가 소재한 토지, 건물 및 C주유소의 시설물, 인·허가권 등을 강탈하고, 원고에게 C주유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기초사실과 임대차보증금 6억 원에 관한 부분을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이하 '제1사유'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의 목도장을 임의로 제작·날인하여 재심대상사건에 제출된 원고 명의의 채권채무확인서를 위조하였다(이하 '제2사유'라 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제1사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제1사유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사유는 그 내용상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인바(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참조), 제1사유는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제2사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에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에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 명의의 채권채무확인서를 위조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 채권채무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제2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	----	-----

판사	송혜정
----	-----

판사	민달기
----	-----